



# 일본 건축사 제도

정보신청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 I. 서언

우선 법적으로 건축사에 관한 법령들을 고찰해 보면 건축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권한이나 업무의 성격을 보면 단순한 자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축사는 의뢰받은 고객의 집 또는 호텔 등의 건물의 구조를 설계·공사감리하여 사람이 살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물로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사는 건물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제1선의 책임자인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 또한 각 건축사에 의한 일차적인 권한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나<sup>1)</sup>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축사의 업무는 그 성격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학에서 말하는 생존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주권(본고의 성격상 거주권과 주거권에 관한 용어에서 오는 의미의 차이에 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한다)의 일차적인 물질적 요소, 즉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제1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이외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의 시설에 있어서도 이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 II. 일본 건축사제도 개요

### 1. 건축사법의 입법목적과 배경

일본에서는 건축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건축사인 공사감리자를 통해서 건축하도록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건축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1) 행정의 감독적인 역할의 하나로서 건축확인제도가 존재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건축확인제도는 1998년 건축기준법의 제정 전까지는 오로지 행정내부의 건축주사에 의해 행해졌으나 1998년 개정 이후에는 민간의 건축사무소 등과 같은 일반 영리법인에게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로인해 민간 건축사무소의 건축확인에 의한 형식적 건축확인이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 건축사법은 1950년 건축기준법의 제정과 더불어 같은 해 제정(법률제202호)되어 몇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건축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을 행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꾀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건축사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배경으로서는 패전 후 국토부흥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위생 및 화재·재해 등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질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을 시작으로 건축사법의 제정에 이르렀다. 즉 건축사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고 등록면허제로서의 기술수준을 확보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제도를 확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제정 전부터 유럽 각국의 건축사법을 토대로 한 건축사법의 제정을 꾀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 즉, 업무내용·업무형태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아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업무내용이나 업무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결국 그 직능(職能)이 미성숙·미분화된 건축사를 양성하게 되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구조는 제정 50년을 넘어선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건축관계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sup>2)</sup>.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내진강도위조 사건이 이슈화 되어 건축행정과 건축사들의 비도덕적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 「建築士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よる建設業法の改正について」(建設業しんこう, 2007, 1)

## 2. 건축사법의 주요내용

### (1) 면허

건축사법 제4조에서는 일급건축사는 국토교통대신이 주관하는 일급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대신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에서는 이급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 일급건축사와는 달리 이급건축사와 목조건축사는 각 도도부현 지사가 주관하는 이급건축사시험 또는 목조건축사시험에 응시하도록 관할을 달리하고 있다.

### (2) 시험

건축사 시험과 수험자격에 관해서는 건축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급건축사시험 및 이급건축사 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험자격에 관해서는 제14조(일급건축사 시험의 수험자격)와 제15조(이급건축사 시험 및 목조건축사시험의 수험자격)에 각각 두고 있다.

### (3) 업무

건축사법 제4장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에서 건축사는 설계를 할 경우 설계에 관계된 건축물이 법령 또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설계위탁자에 대해 설계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판례 등에서 건축물의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여야 하는지, 위탁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정지를 필요로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3. 감리업무와 관련한 건축사의 권한과 한계

넓은 의미에서의 감리업무는 “설계의도의 정확한 전달확인이나 공평한 설계변경처리 등에 관한 감리업무”를 말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업무 범위나 보수를 결정한다<sup>3)</sup>. 한편 건축사 법에서는 공사감리에 대해서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사법 제2조에서는 “공사감리란 공사감리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그것이 설계도면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감리라고 하기보다는 공사중의 도면검사에 가까운 업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비교·확인을 통해 설계도면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에 대해서 주의를, 발주자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건축사법 제18조 등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감리자의 의무나 책임은 “자유롭고 유연한 감리계약”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건축사법이 “무겁고 딱딱한 공사감리책임”을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무와 법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공사감리제도가 품질확보, 결함방지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건축·건설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4)</sup>.

현재 일본의 건축계가 발주자나 사회일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이나 건축의 품질확보에 대한 법적구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품질확보란 조금 범위를 좁혀서 물리적 결함(하자)방지, 즉 구조내력(構造耐力) 상의 사고, 우수(雨水)의 침수, 설비성능의 부족 등의 방지를 가르키며 통상 또는 본래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면 확보가능한 범위의 품질에 한정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상호간에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 ① 현행제도에서 공사감리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감리자 내지 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감리업무위탁계약을 맺어 업무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 ② 하지만 공사감리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완벽하게 발주자에게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부공사비와 별도로 업무보수가 발생하는 제3자 감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실무상의 사정이 생겨난다.
- ③ 하지만 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축확인이 통과되지 않기때문에 감리계약도 맺지 않는 명목상의 공사감리자(건축사의 명의차용)가 생겨나고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간단한 감리’, ‘저렴한 감리’라는 감리계약이 발생하게 된다.
- ④ 재건축에 이르게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더불어 공사감리자도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제도상의 검토가 요



3) 「工事監理者としての建築士責任とその限界を考える」(建築雑誌, 2004, 11)

4) 전계주 3 참조

구되고 있다. 즉 최고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계약이나 보수가 없더라도 공사감리자로서의 과실이 있다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 Ⅲ. 건축사 제도에 관한 주요 문제

#### 1. 관할문제

일급건축사 자격의 면허교부, 관리, 취소는 국토교통성이 행함에 반해 일급건축사 사무소의 개설허가, 관리, 취소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일급건축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가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국토교통성의 설명에 의하면 일급건축사는 국가자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의무가 있으며 한편 설계사무소의 업무는 본래 지방의 업무이며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도 도도부현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 건축사가 최초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지, 하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지, 또한 하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라고 한다면 원래의 건축사사무소에서 계약내용에 관한 세부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또한 담당 건축사에게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행정기관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즉 건축행정과 건축사행정에 있어서 톱니바퀴와 같은 형태로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5)</sup>



5) 「建築士の歴史—今さら聞けない建築士制度の歴史」(建築ジャーナル, 2006, 1)

6) 「特集 どうなる・どうする! 建築士—建築士制度見直しをめぐる」(建築ジャーナル, 2006, 10)

#### 2. 건축사의 재시험 관련문제

부실건물이나 내진강도위조사건 등에 의해 건축사의 재시험에 관한 논의마저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기술능력이 저하된 건축사로 인해 부실건물들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기술개발과 연마를 위한 긴장감 조성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각 단체의 반대로 입법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재시험에 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건축사법 제 22조에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유지향상에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각 단체들은 재시험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의무적·주기적 연수 등을 법적으로 보장 또는 의무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절충적 의견을 내고 있다.<sup>6)</sup>

#### 3. 관리건축사의 권한문제

일본의 건축사법상 관리건축사는 각 설계사무소의 업무관리자를 말한다.

이 관리건축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건물이나 비도덕적인 내진강도위조사건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즉 개별적인 일급건축사에 대해 업무의 진행 방법이나 내용에 관해 지시명령을 내리고 감독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실무상 관리건



축사가 소속 일급건축사의 개별 업무에 관해 지시·명령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각 일급건축사의 원활한 업무진행에도 방해된다는 실무자 단체의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또한 인건비 삭감을 위해 최소한의 건축사를 두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업무책임은 어디에 둘 것이냐고 하는 책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사업경영을 행하는 관리책임자이며 경영능력이 있는 자라면 건축설계나 공사감리에 정통한 자가 아니라도 관리건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나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sup>7)</sup>

#### 4. 행정사무의 시장화 테스트와의 관련문제

일본에서는 1998년 건축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종래 행정기관(건축주사)이 행하던 건축확인에 대해 지정기관(지정법인)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정법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복수의 지정법인을 인정하고 경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시행 목적중의 하나이며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영리법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점에서 종래의 사무위탁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행해 왔던 건축확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행할 경우에 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정법인과 심사를 받는 측인 건설회사와의 관계나 건설회사의 요구에 의해 극히 단기간에 심사가 행해지는 등 여러가지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행 당초부터 우려되었던 문제였고 시행 9년을 맞은 현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앞서 말한 지진에 대비한 내진강도위조사건 등은 영리법인에 의한 건축확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건축확인제도를 민간의 영리법인에게도 개방한 가장 큰 이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확인이 그 처리건수가 방대하고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민간으로”라는 정책적 슬로건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이다.<sup>8)</sup>

제도의 취지만을 볼 때 행정기관도 민간과 경쟁하며 행정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 하지만 문제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을 간과한 법시행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 IV. 평가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의 쟁점은 “건축설계가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특정 건축사제도의 창설이나 일급건축사 자격의 검토나 평생 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안정성, 즉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덕적인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7) 「建築物の安全性確保に向けた建築士制度見直し」(立法と調査, 2006, 10)

8) 榎原秀訓·尾林芳匡『市場化テスト法—仕組みと論点』(自治体 研究社, 2006)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일반론을 법적으로 어떻게 담보하고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 그 과제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건축 실무를 고려해 볼 때 현대 건축물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맞추어 전문적인 공사감리를 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사 등의 육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내진강도위조나 형식적인 감리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감리시에 의무적 감리사항으로써 규격표준서나 감리요강 등을 보다 철저히 작성하여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각종 건축물에 대해 과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메뉴얼화하는 것이 건축실정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에서 일본의 현행 건축사 제도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과 실무적 관행과 법제도간의 괴리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사의 권한과 감리제도의 실효성확보, 건축사의 책임문제 등에 관한 검토는 건축사 제도의 시행 목적에 맞추어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 경 덕**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원)